

노벨평화상과 한반도의 평화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명예교수 김 호 징

1. 독재자의 속성(屬性)

1938년 9월 29일 독일의 Munich에서 당사자인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자리에서, 독일의 총통 Hitler, 이탈리아의 수상 Mussolini, 영국의 수상 Chamberlain, 프랑스의 수상 Daladier은 (독일인이 많이 살고 있기는 하나 엄연한)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의 일부인 Sudetenland를 독일에 병합시키되 그 대신 Hitler는 “유럽에서 앞으로 더 이상의 영토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힘없는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칭 뮌히 협약(Munich Agreement)이라고 한다. 그리고 Chamberlain은 Hitler와 “앞으로 영국과 독일 사이의 이견(異見)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자”라는 다짐을 서면으로 하였다. Chamberlain은 런던의 공항에 귀환해서 이 서면을 번쩍 들고 “친구들이여,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영국 수상이 명예스러운 평화를 가지고 독일에서 돌아왔다. 나는 이제 평화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비행장에 마중 나온 영국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그런데 약 6개월 후인 1939년 3월 Chamberlain과의 약속을 깨고 Hitler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부분 즉 나라 전역(全域)을 점령하여 버렸다. 결국 Hitler는 영국과 프랑스를 기만한 셈이다. 그리하여 이 사실은 “독재자에게 유화(宥和)정책은 금물(禁物)이다.”라는 원칙의 논거(論據)로서 자주 인용되었다.

1939년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소련 외상 Molotov는 나찌(Nazi)국가인 독일의 외상 Ribbentrop와 만나서 독소(獨蘇)불가침조약에 서명하였다. 겉으로는 불가침조약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폴란드를 위시한 동유럽 여러 나라를 독일과 소련의 두 세력권으로 나누고 각각 분할 점령하자는 비밀협약이 들어있었다. 당시 이미 1932년 7월 25일에 맺은 소련-폴란드 사이의 불가침조약이 살아 있었고, 1934년 1월 26일에 맺은 독일-폴란드 간의 불가침조약도 아직 유효한 상태였다. Ribbentrop가 소련에서 돌아온 직후인 1939년 9월 1일 Hitler의 독일 군대는 서쪽에서 폴란드를 침공하였고, Stalin의 붉은 군대는 1939년 9월 17일 동쪽에서 폴란드를 침공하여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 두 독재자 Hitler와 Stalin은 폴란드를 철저하게 배신한 것이다.

영국이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契機)로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이차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Hitler는 그의 유일한 저서 “Mein Kampf(나의 투쟁)”에서 독일 민족은 세계 제일이며,

열등한 슬라브 민족의 소련을 정복하여, 독일인의 삶의 터전을 넓히고, 풍부한 농산물과 천연자원을 획득하고, 슬라브 족을 노예화(奴隸化)해서 노동을 착취할 것을 일찍이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Molotov-Libbentrop의 독·소(獨蘇)불가침조약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은 언젠가는 터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동쪽의 소련을 이 조약으로 묶어두고, Hitler는 서쪽으로 독일 군대를 보내서 1940년 5월 영·불(英佛)의 연합군을 Dunkirk해안에서 바다로 밀어내버렸다. 이어서 독일군은 6월에 프랑스의 수도 파리로 진격하여 6월 25일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냈다. 독일은 싸움을 시작한지 6주일 만에 난공불락(難攻不落)으로 믿었던 마지노요새(Maginot要塞)와 280만의 군대를 지닌 프랑스를 유린(蹂躪)하여 190만의 프랑스 병사를 포로(捕虜)로 잡았다.

소련의 Stalin은 영국과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의 독일이,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한지 2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소련에 전면전을 걸어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독일-소련 간의 무역협정에 따라서 소련이 독일로 보내는 철광석을 실은 열차가 서쪽으로 달리고 있는 때인 1941년 6월 22일 새벽에 320만의 Hitler의 군대는 3군(群)으로 나누어 기갑부대를 앞세우고 일제히 독일과 소련의 경계선을 넘었다. 즉 독일이 소위 “바바로샤 작전(Operation Barbarossa)”이라고 명명(命名)한 독·소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Hitler는 독일-소련 간의 불가침조약을 (가) 서쪽의 프랑스를 정복할 시간을 벌고 또한 (나) 독일과 소련이 직접 인접(隣接)하여서 기갑부대를 앞세운 전격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한 것이다. 결국 Hitler는 Stalin을 기만한 셈이다. 모든 독재자는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Hitler는 도발되지 않는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 국가를 유린하였으며, 유대인수용소에서 수백만의 사람을 학살하였다. Stalin 역시 혁명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처형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 사람을 학대하고 죽게 하였다. 1932~1933년에 자신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농민이 주(主)인 Ukraine 사람들 600만 이상을 아사(餓死)시켰다. 소련군대는 폴란드를 침공해서 1940년에 생업(生業)에 종사하고 있는 예비역을 포함해서 폴란드군 장교 약 5,000명을 학살하여 Katyn의 숲에 암매장(暗埋葬)하였다(Katyn Forest Massacre).

R.J.Rummel⁽¹⁾의 통계에 의하면 1816~2005년에 지구상에 있었던 371개의 전쟁 중 205개는 비(非)민주국가 대(對) 비민주국가, 166개는 비민주국가 대 민주국가이었으며, 민주국가 대 민주국가의 전쟁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정치적 학살(政治的虐殺, democide)과 아사(餓死)에 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적 법칙(empirical law)을 얻었다.

“정부가 보다 많은 권력을 지닐수록 전쟁, 정치적 학살, 아사가 더 많이 생기며, 정부 권력이 보다 통제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일이 덜 일어난다. 정부권력이 극단으로 커지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굶어죽는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잉여(剩餘)농산물이 생기며, 사람들

이 연쇄살인범(連鎖殺人犯)의 사형집행까지도 반대한다. 권력은 사람을 죽인다.”

전쟁, 정치적 학살 및 대량 아사(餓死)는 독재국가(獨裁國家)의 속성(屬性)이고, 이를 피하는 길은 민주국가로의 체제변화(體制變化)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가 뜻하는 민주주의는 인권보장(人權保障), 주권재민(主權在民), 권력분립(權力分立), 법치(法治), 외국과의 평화공존(平和共存)을 근간(根幹)으로 한다. 인권은 1948년의 UN의 세계인권선언과 이에 후속한 국제인권협약에 명시된 “인간의 천부적(天賦的) 자유와 권리”를 뜻하며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結社), 신교(信教), 거주지 선택, 출입국의 자유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독재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이다. Rummel에 의하면 인권의 근간(根幹)인 자유는 사회정의(社會正義)의 기초이며,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진보의 원동력이 되며, 대중빈곤(mass poverty)을 방지하고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기여하는 절대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주권재민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의사표시 수단인 선거는 정기적(定期的, periodic)으로 있고, 복수후보를 대상으로 하고,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헌법은 물론 모든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치(法治)이다.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유지의 명분을 “하나의 지도자(ein Fuhrer)의 영도(領導)로, 하나의 민족(ein Volk)에 의한, 하나의 나라(ein Reich)의 건설”이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건설” 등 대외적(對外的) 과제(課題)의 해결에 두고, 군사력에 의한 목적달성을 구실로 선군정책(先軍政策, 軍國主義政策)을 쓴다. 그들이 뜻하는 평화는 공존(共存)이 아니라, 정복(征服)-투옥(投獄)-처형(處刑)에 의한 복종을 뜻한다. Hitler, 도조(東條英機)와 Stalin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2.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의 60년 정권

2차대전 말 대일(對日)전쟁에 단 일주일 참가한 Stalin의 소련군대는 미국의 양해 하에 한반도의 북위(北緯) 38도선 이북에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진주하였다. 그런데 소련군은 그들의 초급장교이었던 김일성(金日成)을 소련군함 Pukachev에 태워서 1945년 9월 19일 원산(元山)항을 거쳐서 북한에 입국시켰다. 그리고 1945년 10월 14일 평양의 공설운동장에서 33세의 김일성은 평상복 차림에 소련정부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훈장 하나를 왼쪽 가슴에 차고, 소련군 고급장교들의 입회(立會) 하에 Itzyatzev 대령에 의하여 평양시민에게 “김일성장군”으로 소개(紹介)되었다⁽²⁾.

김일성은 소련군의 절대적 후원으로 북한 땅에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여 갔다.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를 논의하는 1945년 말의 모스크바 미·소·영(美蘇英) 삼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이 가결 발표되었다. 그러자 남북한의 정치사회단체 거의 모두가 이안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런데 김일성과 그 추종자들은 소련군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두만강 바로 건너의 소련을 포함한 4개국(美·英·蘇·中)에 의한 5년간의 신탁통치를 받아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소련군과 김일성은 북한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한 민족주의자 조만식을 감금(監禁)하였다. 모스크바의 삼국외상회의의 약속에 따라서, 신탁통치의 절차를 의론(議論)하고자 구성된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의대상단체의 자격요건에 관한 이견(異見)으로 1947년 8월 말 결렬(決裂)되었다. 즉 신탁통치안은 물 건너갔다.

미국은 차선책(次善策)으로 “UN 감시 하에 한반도 전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반도에 통일독립국가를 세우자” 라는 안을 UN에 상정시켰다. 그리하여 1947년 11월 14일 UN총회 전체회의는 “한반도 전역(全域)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련임시한국위원회(國聯臨時韓國委員會,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ttee on Korea; UNTCOK)를 구성하고, 이로 하여금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될 총선거를 감시하게 하자” 는 안을 43대 0으로 가결하였다. 그러자 한반도를 동구(東歐)의 여러 위성국가와 같이 만들려고 작심한 Stalin의 소련군 당국과, 두만강 건너의 소련이라는 외세를 업고 기득(既得)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김일성은 UNTCOK의 입북(入北)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UNTCOK는 접근(接近)이 가능한 38선 이남에서 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선거일을 1948년 5월 10일로 잡았다. 그러자 김일성은 이번에는 이를 남한만의 단독선거라고 공공연하게 배척하였다.

즉 김일성은 (바로 강 건너의, 자기를 보살펴주었던) 소련이 관여하는 신탁통치를 받는 것은 좋으나, UN 감시 하의 한반도 전역에서의 공정한 총선거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구가 2/3 이상인 남한에서 만이라도 UN 감시 하에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이것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UN은 외세이니까”라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고, 실은 그가 반대한 것은 (UN이 직접 감시함으로써 보장하려는) 점령군 당국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고, 복수정당제가 보장된 상태에서, 복수후보를 대상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이었다.

그는 북한에서 46년간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조만식, 김규식 등 우익 정치가를 숙청 처형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 공산주의자들인 박헌영, 김두봉, 허가이 등도 처형 숙청하면서 한반도 (UN의 인권선언에 있는 것과 같은) 진정한 선거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이 결론을 입증(立證)한다.

5.10선거 3개월 전에 김일성과 그 추종자들은 북한 땅에서 1948년 2월 소위 인민군을 창설하고 이를 보강해가면서, 미소양군의 조기철수를 요구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자인 조만식을 가두어둔 채 조선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起草)하고 있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을 추종하는 남한의 좌익인사들은 폭력·살인·방화·습격 등의 수단으로 질서를 깨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남한

사람들의 총선거 참여를 적극 방해하였다.

민족의 광복(光復)운동의 유공자이기는 하나, 백성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나 정치가가 아닌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의 반탁(反託)인사들은 5.10선거를 약 보름 앞두고 38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 박헌영 김두봉 등의 찬탁(贊託)인사들과 만나서 이른바 요인공동성명서(要人共同聲明書)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을 즉시 철거하게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자주적으로 임시정부를 만들어, 질서는 우리가 보장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보통-평등-직법-비밀선거를 관리하고, 그 결과 구성되는 입법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따라 통일정부를 수립하자(외세인 UN 감시하의 한반도 전역에서의 선거는 물론이고). 남한 만에서의 선거도 이를 반대한다.”

로 요약된다. 소련군의 장교이었고, 소련군의 절대적 후원으로 북한에서 권력을 잡고 군대까지 조직하여 놓은 사람이(요사이의 언어로 하면) 남한의 시민단체장(長)들과 모여서, 자칭 요인(要人)이라 하면서 만든 작품이다.

1948년 당시 한반도 총 인구의 2/3 이상이 남한에 거주하였고 1/3 미만이 북한에 살고 있었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남한 유권자의 95%가 선거에 참가하겠다고 등록하였다. 이는 남한 유권자의 5%(=100%-95%) 미만이 북한의 김일성과 그의 추종자들, 남한의 김구, 김규식, 조소앙의 뜻에 동조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5% 중에는 5.10선거 당시 테러 살인 방화 협박 등으로 사회교란을 한 인사들이 포함된다. 또 선거등록자의 90% 이상이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에서 실제로 투표를 하였다. 입후보자의 경쟁률은 4.7대 1이었다.

이 사실은 첫째로 38선 이북에서도 남한에서와 같이 UN감시 하에 공정-자유선거를 하였다면 역시 비슷한 등록율(登錄率)과 투표율(投票率)과 후보경쟁율(候補競爭率)로서 선거가 치루었을 것이라는 개연성(蓋然性)을 뜻한다. 둘째로 남북한 전 인구의 $(\frac{2}{3} \times \frac{95}{100} \times \frac{90}{100} = 57/100)$ 로서 57% 이상이 투표에 실제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 숫자들은 김일성이 1950년 9월에 북한에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세워진 정권임을 뜻한다. 실제로 UN은 1948년 12월 12일에 총회결의 195(III)로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唯一) 합법(合法)한 독립국가로 인정하였다.

김구-김규식을 따라서 평양에 취재(取材)하려간 남한기자와의 회견에서 김일성은 “인민군대는 남정(南征)을 위해 창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한반도에서 외국군이 철수한 후인 1950년 6월 25일에 인민군대에게 그는 남침(南侵)을 명령하였다.

1948. 12. 12에 있었던 UN총회 결의 195(III)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는 유일(唯一) 합법(合法)한 정부라는 것이다.

발행부수가 120만이 넘는 영국의 The Economist지는 Index of Democracy 2008이라는 통계에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순위를 매겼다. 대한민국은 28위, Sudan은 146위, Myanmar는 163위 그리고 김정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사대상 167개국 중 167위이었다. 즉 김정일의 정권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세계 제일의 독재정권이라는 것이다. 발행부수가 3,200만인 미국의 Parade지(誌)는 세계 10대 독재자를 발표하였는데, 가장 가혹한(즉 1위의) 독재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김정일이고, 세계 2위의 독재자는 Sudan의 Omar Al-Bashir이고, 3위는 Myanmar의 Than Shwe이었다.

헌법(憲法) 위에 노동당(勞動黨)의 영도(領導)가 있으며, 노동당 위에 김일성의 교시(敎示)가 있는 나라, 노동당이 지명한 후보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99%가 투표장에 나가서 관헌(官憲)의 감시(監視) 하에 100%의 찬표(贊票)로 대의원을 뽑는 항구적(恒久的) 부정선거(不正選舉)의 나라, 인구 1,000명 당 50명의 현역군인을 유지하고 원자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 배치하면서 백성을 굶어죽게 하는 나라, 국민을 핵(核)계급, 동요(動搖)계급, 적대(敵對)계급으로 분류해서 차별하는 나라이다. 즉 비(非)법치, 부정선거, 불평등(不平等) 및 전쟁지향의 나라이다.

정치적 불평분자(?)의 가족 3대(代)를 모두 가두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관리소(gulag)”에 약 20만 명을 수용해서 노예노동을 시키고 있는 나라,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고 무단으로

외국으로 탈출하면 반역자로 낙인찍히는 나라, 공개처형을 하는 나라, 지상낙원(地上樂園)이라고 주장하는데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야경(夜景)은 암흑(暗黑)인 나라, 외부에서 오는 모든 (라디오, TV) 전파를 차단(遮斷)하면서 소위 아리랑 축제에서는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며, 평양의 방송은 남쪽을 향해서 유명 정치인을 이(李)**놈이라 부르고, **신문사를 폭파(爆破)하라고 선동하는 나라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북한의 국어사전에는 기독교의 목사(牧師)를 “예수교에서 거짓으로 일관된 교리를 해설 선전하고 레베를 지도하며 교회를 관리하는 직에 있는 자.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앞잡이로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라고 적혀있다. 신교(信教)의 자유가 없음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나라이다. Rummel이 기술한 전형적인 독재국가이다.

김일성은 한반도 거주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자유스러운 분위기 하에서 공정한 선거로 수립한 국가를 상대로, 접경국인 소련-중국이라는 외세(外勢)를 업고, 무력 반란(叛亂)을 하여 6.25때 우리민족 200만을 희생시켰으며, 그 후 정치적 살인이나 처형으로 160만을 숨지게 하였다. 아들인 김정일은 1990년대에 북한주민 약 200만 명을 아사(餓死)시켰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와 현실은 자유민주주의의 도입만이 경제적 번영과 인간 개발과 평화 유지의 수단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한반도에 이룩하려는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배탈민족이 영원토록 정체성과 독립을 유지하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1) 먼저 북한에서 체제변화가 일어나서 민주화가 되고, (2) 민주주의국가들인 남북이 동포애(同胞愛)를 바탕으로 문화, 사회면의 동질화와 무상원조에 의한 경제적 균형을 도모하고 (3) 정치, 사회, 경제적 동질화가 충분이 이루어지면 (4) 남북이 총선거를 하여 인구비에 따른 통일국회 대의원을 공정한 선거로 선출하고 (5) 통일국가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면 된다. 이는 타의(他意)건 천의(天意, 자연 사망)이건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소멸(消滅)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선언

한반도 인구의 2/3 이상이 살고 있으며, 인권선언에 있는 공정한 선거로 수립되고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또한 UN이 인정한 한반도에 유일 합법한 정부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의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있고,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헌법의 제69조에 따라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 김대중은 미리 돈을 북한에 송금한 다음 2000년 6월 중순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갔다. 그리고 약 60년 전 영국수상 Chamberlain이 Hitler와 평화를 약속하고 런던의 비행장으로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귀환한 것처럼, 김대중은 성남시 외곽의 서울공항으로 환영을 받으며 돌아왔다. 즉 김대중은 김정일과 더불어 이른바 6.15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그 내용인즉 아래와 같다.

1.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2. 김정일의 정권과 대한민국을 섞어서 2체제-2정부의 연방(聯邦)국가를 만들자.
3. 이산가족을 상봉시키고, 비전향장기수의 석방 등을 하자.
4. 경제협력으로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문화면에서의 교류를 하고 서로 신뢰를 다져나가자.
5. 남북 정부 당국자 간에 대화를 하자.

The Albert Einstein Institute의 Gene Sharp 박사는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라는 논문⁽³⁾에서

- (1) 독재자는 자기 자신을 권좌에서 밀어낼 가능성이 있는 선거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즉 독재자는 스스로 권력의 포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 (2) 군사적으로 상대방보다 충분히 우세하다고 느끼는 독재자라도, 상대방이 만만한 존재가 아닐 때는, 협상을 통해서 상대방의 항복(降伏)을 정중히 받아드리며 “평화를 위해서”라고 위장(僞裝)한다.
- (3) 독재자는 상대방의 굴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라도 한다. 그리고 후일 이 약속을 철면피(鐵面皮)하게 깬다.
- (3) 독재자와 민주주의자의 협상결과는,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정의(正義)롭고 합리적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의 상대적 비중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강자의 의견이 약자의 의견보다 무게가 더 실린 타협안이 된다.
- (4) 독재자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 것은, 대화에 의한 합의로는 불가능하고 우세한 힘이 뒷받침하는 저항(抵抗)만이 유효하다.

독재자인 김정일은 스스로 권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을 권좌에서 밀어낼 가능성이 있는 (UN인권선언에 있는) 진정한 선거는 절대로 안 한다. 김일성이 1948년에 UN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이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의 뜻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또한 UN 등의 감시를 받지 말고”의 뜻이다. 통일 전의 중간단계로서 2체제-2정부의 연방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명분을 제거하여,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1948년 4월 평양을 방문한 김구-김규식-조소앙 등과

더불어 김일성이 소위 “요인공동성명”에서 “먼저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끼리 임시정부를 만들어 남북 총선거를 관리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김일성은 1950년 인민군으로 6.25남침을 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의 숙원사업(宿願事業)은, 쇄국(鎖國)을 철저히 하여 체제단속을 하면서, 남한으로부터 조건 없는 경제원조를 받아서 선군정책으로 군비를 확충하여 남한보다 군사력의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고, 남한과 2체제-2정부라는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진) 미군을 철수하게 하고, 그 후 우세한 군사력으로 남한을 유린하여,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규약에 있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의 본질이다. 북한의 헌법에 있는 “영원한 주석 김일성”의 유업(遺業)을 아들인 김정일은 실천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6.15선언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이 조공(朝貢, 여기서는 수억 불의 돈)을 바치고 김정일을 찾아가서, (상술한) 그의 숙원사업의 틀에 동의하고, 김정일에게서 잠정적 평화의 언약을 받은 항복문서의 내용이다.

휴전협정은 위시하여, 국제인권협약, 한반도비핵화선언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동료 공산주의자(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등)들을 처형 숙청하고, 북한 내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인민을 분류하고 반대자를 박해하고, 핵무기 생화학무기 장거리미사일과 압도적 다수의 병력을 지닌 독재자 김정일의 정권과, 5년마다 대통령이 갈리고, “미제(美帝)의 자본주의에 물이 들 대로 들은” 대한민국을 섞어서 2체제-2정부의 연방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김정일에게 “무력적화통일을 하여도 좋다”는 언질을 준 것과 같다. 굴복에 의한 잠정적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에는 강력한 우리 자신의 대북군사력과 확실한 한미방위협정에 의한 전쟁억지력만이 유효하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작당(作黨)하여 자유민주주의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유사시 김정일 편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나 통일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강한 국방력과 법질서의 유지(維持)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며, 독재자와의 대화나 협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Gene Sharp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결론이다.

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쇄국(鎖國)을 하면서 무역으로 외화를 벌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자신이 후일 Oslo에서 노벨상을 받으면서 “자유민주체제의 기초가 없는 국가경제는 모래 위의 성(城)이다.” 라고 연설하여 갈채(喝采)를 받았다. 북한에 체제변화가 일어나서 민주화가 되어 정치면에서의 균형적 발전이 선행(先行)되지 않고는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불가능함을 김대중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Internet을 차단하고 학술교류나 연구 활동은 불가능하다. 방송전파를 차단하고 남북이 문화교류를 통한 동질화는 불가능하다. 20만의 사람을 가혹한 정치범수용소에 가두어두고, 수많은 동포를 아사(餓

死)시킨 장본인에게서 국군포로송환이나 피납(被拉) 인사의 남송(南送)이라는 인도적 처사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이루어진 것은 남한에 있는 비전향 빨치산을 북송(北送)하고, 금강산에서 소수의 이산가족을 상봉케 한 실적뿐이다. 김대중은 김정일과의 잘못된 만남에서 잘못된 언질을 주었다.

김대중은 방북(訪北)과 6.15선언을 통해서, 김정일을 평화에 기여한 인물로 장식해서 그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는 평화의 허상(虛像)을 앞세워 국가보안법을 시문화(死文化)시켜서, 친(親)김정일 인사들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질서파괴 내지는 교란활동에 대하여 우리 사회를 취약(脆弱)하게 만들었다. 김대중과 그의 후속정권의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돈과 쌀과 질소비료를 주어 김정일의 군사력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즉 돈은 원자탄 개발과 미사일 제조를 도왔다. 쌀은 군량미로 전용되고 질소비료는 군용 화약이나 미사일 연료로 가공 변환될 수 있다. 경의선과 금강산통로를 개통한다고 방어용 지뢰를 제거하였으며, 6.25 때의 인민군 남침로(南侵路)의 대전차 장애벽(障礙壁)을 철거하였다. 엄연히 휴전상태에 있는데 마치 항구적 평화가 온 것처럼 “인민군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하여 젊은이로 하여금 국방의무에 회의(懷疑)를 가지게 하였다. 즉 김정일의 대남(對南)군사력 증강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우리 겨레의 현재와 미래의 번영에 불가결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hard ware와 soft ware 모두에 심대한 손상을 입혔다.

그리고 김대중은 우리의 북한 동포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김정일을 서울로 초대하였다. 물론 2009년 2월 현재까지 김대중의 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결국 김대중-김일성의 6.15선언과 그의 후속조치는, 남북 군사력의 대칭적 균형을 깨서 한반도의 평화에 역작용을 하였으며, 한반도 전체에서 인권의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 탄생을 보다 어렵게 만들었다.

4. 김대중에게 수여한 Nobel평화상

스웨덴의 화공기사(化工技師) Alfred Nobel(1833.10.21~1896.12.10)은 니트로그리세린(Nitroglycerin)이라는 취급하기 힘들고 불안정한 폭발물질을 고체(固體)에 흡수시켜서 다루기 쉬운 안전한 폭발물인 다이나마이트(dynamite)를 만들었다. 이 다이나마이트는 토목공사와 광산에서의 채굴(採掘)작업에 유용하게 쓰여진다. 그리하여 갑부가 된 그는 사망 전 해인 1895년 11월 27일에 프랑스 파리의 Swedish-Norwegian Club에서 그의 유산으로 노벨상을 제정한다는 유언장에 서명하였다. 후세의 과학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하여 반감기(半減期, half life)가 짧은

102번 원소(元素)를 Nobelium이라 이름 짓고 No이라는 원소기호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노벨상은 당초에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에서의 큰 발견이나 업적과 평화에의 기여라는 5개 분야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유언에 따라서 평화상을 제외한 4개 분야의 상은 스웨덴의 수도 Stockholm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의 수도 Oslo에서 매년 노벨의 기일(忌日)인 12월 10일에 수여하도록 되었다.

Alfred Nobel의 유언서의 일부

The whole of my remaining realizable estate shall be dealt with in the following way: The capital shall be invested by my executors in safe securities and shall constitute a fund, the interest on which shall be annually distributed in the form of prizes to those who, during the preceding year, shall have conferred the greatest benefit on mankind. The said interest shall be divided into five equal parts, which shall be apportioned as follows: one part to the person who shall have made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or invention within the field of physics; one part to the person who shall have made the most important chemical discovery or improvement; one part to the person who shall have made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within the domain of physiology or medicine; one part to the person who shall have produc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the most outstanding work of an idealistic tendency; and one part to the person who shall have done the most or the best work for fraternity among nations, for the abolition or reduction of standing armies and for the holding and promotion of peace congresses.

The prizes for physics and chemistry shall be awarded by the Swedish Academy of Sciences; that for physiological or medical works by Karolinska Institutet in Stockholm; that for literature by the Academy in Stockholm; and that for champions of peace by a committee of five persons to be elected by the Norwegian Storting. It is my expressed wish that in awarding the prizes no consideration whatever shall be given to the nationality of the candidates, so that the most worthy shall receive the prize, whether he be Scandinavian or not.

노벨은 그 유언에서 (1) 국가 간의 우호(友好) 증진(增進) (2) 현역 군대를 철폐(撤廢) 또는 감축(減縮) (3) 평화회담의 개최(開催) 또는 추진(推進)에 팔목하게 기여한 사람에게 평화상을

수여하라고 하였다.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사회의 현상이기에, 평화상 대상자를 노벨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한정하였다.

2008년 10월 노르웨이의 변호사 Fredrick Heffermehl은 “Nobels Vilje (노벨의 유언)”이라는 저서에서 “이차대전 전(前)의 노벨평화상의 85%와 이차대전 후(後)의 노벨평화상의 45%만이 이 상의 창시자인 노벨의 뜻과 유언에 맞게 수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민주화(民主化)나 인권(人權)신장에의 기여로서 평화상을 수상하는 예가 많아졌다. 분명히 시간이 감에 따라서 노벨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평화에의 기여”를 보다 광의(廣義)로 해석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해석 여하에 관계없이, 논란(論難)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평화상 수상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 1945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Hull이, 1973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Kissinger가, 1994년에 PLO의 Arafat 수반과 이스라엘의 Rabin 수상, Peres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받은 평화상들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평화상에 적격(適格)인 인도의 국부(國父) 간디는 받지 못하였다.

노르웨이국회가 임명하는 5명으로 구성되는 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상후보 지명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에 맡겨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5명의 위원회에서 다수결 투표로서 그 해의 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평화상후보의 지명(추천)자격자는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 정부관리, 국제재판소 판사, 대학교 총장, 평화연구소 소장, 외교연구소 소장, 전(前)평화상수상자, 현(現)전(前)노르웨이노벨위원회위원, 전(前)노벨위원회고문(顧問) 등이다. 국회의원, 정부관리들은 정치가로서 정치적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노벨평화상은 노벨과학상과 달리(정치적) 중립성이 결여(缺如)됐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에게 서기 2000년에 노벨평화상을 주었던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 5명의 위원은 아래와 같다. 이 노벨위원회의 Berge 위원장은 2000년 12월 10일 Oslo에서 김대중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이 름	생 년(生 年)	소 속 당
Berge, Gunnar (위원장)	1940	Labor Party
Stalsett, Gunnar	1935	Center Party
Kvanmo, Hanna	1926	Socialist Left Party
Ronbeck, Sissel	1950	Labor Party
Ytterhom, Inger-Marie	1941	Progress Party

- (1)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하여 권위주의 정권과 싸웠으며, 동아시아 (특히 미얀마와 동티몰) 지역에서의 인권신장에 기여(寄與)하였다.
 - (2) 북한과의 화해(和解)와 평화에 기여하였다.
- 절제(節制)되지 않는 자유(自由, freedom)는 사회혼란(社會混亂)을 낳고, 과도한 규제(規制),

discipline)는 창의성 침체(創意性沈滯, stagnation of creativity)를 낳는다. 둘 다 국력을 해치는 비능률이다. 즉 자유와 규제는 그 구성원의 능력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성숙도는 국민의 인간개발지수(UN의 human development index)에 대체로 비례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삶의 질이 그리 높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어떤 정치가는 의식주의 충족을 민주발전보다 우선적인 과제라고 믿었다. 이들은 안정 속에 경제발전을 원했다. 어떤 정치가는 국민에게 보다 큰 자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갈등이 생겼다. 여기에 북한의 김일성 독재정권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남한의 사회질서 파괴와 후방교란(攪亂)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병력이 직접 대치(對峙)하고 있는 휴전상태에서 사회혼란과 무질서의 의도적(意圖的) 조장(助長)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行爲)가 된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 때 일본 동경에서 납치되어서 한국으로 끌려온 일이 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1월 23일에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과 방공법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보다 4일 전인 1981년 1월 19일 평양 방송은 김일성 정권의 부주석인 김일(金一)이 김대중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하였었다(조선일보 1981년 1월 20일 제1면 참조). 이는 김대중이 친김일성인사(親金日成人士)이었음을 시사(示唆)한다.

김대중의 해외와 남한에서의 반정부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발전에 기여한 애국애족(愛國愛族)의 민주화운동인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적행위이었던지의 판단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밝혀야 할 명제이다.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는 남한에서의 김대중의 반정부 활동을 “민주화를 위한 권위주의 정부와의 싸움”으로 해석하였다.

UN이 한반도에 있는 유일합법정부라고 결의하였고, 헌법에 그 영토를 한반도 전역(全域)이라고 명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은, 세계 제일의 독재자인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 땅에, 인권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심으려는 민주화운동을 시도한 일은 없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UN의 인권선언(북한도 가입하고 있는)과 국제인권협약에 있는 공정하고도 자유스러운 선거가 아니라, 부정한 선거로 정치권력을 유지하면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기치를 들고, 민족의 2/3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선진(先進)대한민국 정부를 무력을 써서라도 전복(顛覆)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자와 만나서, 그를 북한의 우리 민족 동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를 두고 노벨위원회는 대등(對等)한 두 국가 원수(元首)간의 만남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김정일의 무력남침 정복(征服) 의도가 숨겨진 한반도 통일 방안에 동의한 것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약속으로 해석하고, 호전적인

김정일의 대남전력강화에 이바지하는 일방적 대북원조를 “햇볕”으로 간주(看做)하고, 이 “햇볕”을 평화를 지향하는 화해(和解)의 상징으로 받아드렸다.

군축(軍縮)이나 평화정착을 위한 회담과는 거리가 먼 김대중-김정일의 만남과 선언,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 땅에서의 인권회복이나(자유)민주화에는 기여한 바가 없고, 남한에서의 (자유)민주화운동 여부는 논란(論難)의 여지가 있는 김대중의 행적이 평화상의 대상이 됐다. 더욱이 회담도 그리고 소위 화해도 김대중과 김정일이 더불어 하였는데 노벨위원회는 평화상을 김대중 한 사람에게만 수여하였다. 이는 사회 통념(通念)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유야 어떻든 대한민국 국적의 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당사자 본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런데 노벨평화상은 그 자체가 지니는 세계적 권위 때문에 국내외의 정치 환경 특히 국가안보,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특히 남북 분단과 휴전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는 그 영향이 심각하다.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이나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헌법과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 사전에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는 대통령이 초(超)헌법 행적은 법질서 유지에 혼란을 가져왔다. 더욱이 “노벨평화상의 세계적 권위”라는 후광(後光)을 업은 행적에 현행법은 제재(制裁)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6.15선언 후 남한에서는 반(反)헌법적 그리고 위법적 정치행위에 대하여 대중(大衆) 불감증을 만연(蔓延)시켰다. 특히 풍요(豊饒)속에서만 자라난 젊은이들은 중고등학교시절 받은 반공교육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남한에서 “민주, 민주화, 민주주의, 평화, 인도주의”로 위장한 친(親)김일성-김정일 인사들이 내놓고 친북활동을 하여도 제재(制裁)를 받지 않는다.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수십일 지속한 광우병춘불시위에 진보(進歩)를 자처하는 국회의원이 참가하였다. 세대(世代) 간 갈등, 지역(地域) 간 갈등과 소득 계층(階層)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즉 극심한 사회 분열(分裂)이 안녕(安寧)과 질서를 해치고 혼란을 야기(惹起)시켰다. 이는 바로 김정일이 바라는 바이다. 같은 헌법 하에 있었던 노태우,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 노벨평화상이 남한의 평화를 해(害)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Freedom House의 “자유”의 국가별 통계는 북한을 세계에서 국민의 인권상태가 가장 열악(劣惡)하다고 하며, UN은 총회결의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흑인여성 국무장관이었던 라이스 여사는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an outpost of tyranny)라고 불렀으며, 김일성-김정일의 60년 세습정권이 전쟁-정치적 학살-기아(飢餓)로 우리민족 수백만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이 사실인데, 남한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거부(拒否)반응이 약해지고, 거래와 후손들을 위하여 평화적 과정을 거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약해졌다.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를, 그리고 일본이 신라의 역사를 왜곡한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자신의 왜곡되어 있는 역사에는 불감증에 걸려 있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우리 민족 수백만을 희생시켰

는데 그들을 민족반역자라고 부르는 이는 없고, 해방 당시 25세 이상이면 2009년 현재 살아있어도 89세 이상인 (당시로서는 고학력의) 인사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운다. 남북분단의 책임을 김일성이 아니라 이승만에 돌린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정권안보에 기여하는 원조를 하면서, 북한의 동포를 돕는 민족공조라고 주장하고, 인민군이 남침하면(방위조약으로 한국에 주둔(駐屯)하고 있는 미군 편에 서지 않고) 동포인 인민군 편에 서겠다는 사람도 있다. 즉 인권보장과 번영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사수(死守) 보다는 독재자에 의한 무력통일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결국 김대중에게 수여한 노벨상은 간접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에 의한 남남갈등을 심화시켰다. 평화가 아니라 혼란에 기여한 평화상이 됐다.

5. 맺는 말

휴전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가능성이 없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이 민족의 영원한 독립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 평화를 해치는 주범(主犯)은 한반도 인구의 1/3 미만의 북한 주민조차도 잘못 먹이면서, 일인당 GDP가 10배 이상이며 2/3 이상의 인구가 사는 남한을 “민족해방”이라는 허무맹랑(虛無孟浪)한 기치를 앞세워 기회만 있으면 무력으로 유린하기 위하여,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에만 분주(奔走)하는 김정일의 60년 세습독재정권이다. 김대중-김정일의 평양회담, 6.15선언, 대북원조를 포함한 후속조치 들은 북한의 대남전력 강화와 남한의 대북방위력약화에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평화 유지에 불가결한 남북 군사력의 대칭적(對稱的) 균형(均衡)을 깬다. 원자탄과 다량의 미사일, 증원된 특수부대와 110만의 군대를 지닌 북한의 고위장성(將星)은, 그들의 장거리 로켓(rocket) 발사에 따르는 남한의 대응조치를, “대북선전포고로 간주(看做)한다”고 평양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정부를 협박한다. 그리고 남한의 소위 “진보” 정객(政客)은 “북을 자극하지 말자”면서 정부조치에 제동을 건다. 노벨평화상이 손을 들어준 “햇볕”정책이 만들어낸 희극(喜劇)이다.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는 정치적 색깔을 떨 수 있는 현재의 노벨평화상 선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노벨과학상들과는 달리, 잘못 주어진 노벨평화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부정적(否定的) 방향으로 밀을 수도 있으니, 보다 신중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김대중에게 수여한 평화상은 한반도의 평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직간접적(直間接的)으로 나쁜 영향을 끼쳤다.

한반도는 배달민족의 오래된 정착지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풍요롭고, 삶의 질이 높고,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어 영원히 그 정체성(正體性)을 유지하려면 과학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좁고, 자원은 고갈되었으며, 중국-러시아-일본의 초강국에 포위되어 있다.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수요에 미달하며, 부가가치를 수출하는 무역으로는 외화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식의 수출로 국부(國富)를 쌓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주변의 나라보다도 더 과학-기술 진흥에 힘써서 지식사회를 지향(志向)하여야 한다. 획기적 발견과 발명에 기여할 과학자 기술자의 양성에 투자를 강화하여서, 우리 국민의 우수한 IQ(국민의 평균 IQ가 106으로서 국가로서는 세계 제일이다)에 걸맞게, 많은 노벨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과 문학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되어야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 처음으로 받은 노벨상이, 늘 논쟁의 여지가 있는 평화상이 아니라,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또는 문학상이었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다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

(참고자료)

1. Rummel, R.J.(2005). Never Again, Coral Springs: Lumina Press
〈<http://www.hawaii.edu/powerkills/NA.SUPPLEMENT.PDF>〉에서 받음.
2. Kim Il Sung. The Wednesday Report: Canada
〈http://www.thewednesdayreport.com/kim_il_sung.htm〉에서 사진을 받음.
Kim, Y.S. Eyewitness: A North Korean Remembers
〈<http://www.tparents.org/library/religion/cta/korea-j/eyewit09.htm>〉과
〈<http://www.tparents.org/library/religion/cta/korea-j/eyewit10.htm>〉에서 받음.
3. Sharp, Gene(2002).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Boston: The Albert Einstein Institution 〈<http://www.aeinstein.org/organizations/org/FDTD.pdf>〉에서 받음.